

공 해 방 지 규 정

(제정 1998.10.2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공해방지 시설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공해방지”라 함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여 전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사전 방지함을 말한다.

② “배출”이라 함은 본교에서 배출하는 각종 공해물질(대기, 수질, 폐기물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교에서 배출하는 모든 공해물질 배출부서에 적용한다.

제4조(조직 및 업무) ① 본교의 공해방지에 대한 제반 업무는 시설지원실에서 담당한다.

② 당해 부서장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유해물질의 관리
2. 환경관리 담당자 지정
3. 기타 공해방지에 필요한 사항

③ 환경관리 담당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물질을 취급하고 공해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5조(분리수거) 환경관리 담당자는 각종 폐기물을 성분별로 분리·수거하여 폐기물 처리 전문업체에 용역 처리한다.

제6조(배출기준) 배출부서에서 관계법령의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을 배출할 경우 총무처장은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배출부서의 장은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환경관리 담당자로 지정된 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3-1-28-2 공해방지규정

이 규정은 2002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